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 20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99호, 2022.8.2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2년 8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에 '별지1'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별지1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신설 >

주성분코드	제품코드	제품명	업체명	규격	단위	상한금액	퇴장방지		투여	비고
							품목	사용장려금		
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										
683901BIJ	galcanezumab 0.12g(0.12g/mL)									
683901BIJ	670801191	앵겔러티120밀리그램/밀리리터 프리필드시린지주 (갈카네주맙, 유전자재조합)_(0.12g/1mL)	한국릴리(유)	1	mL/ 관	295,250			주사	
683901BIJ	670801201	앵겔러티120밀리그램/밀리리터 프리필드펜주 (갈카네주맙, 유전자재조합)_(0.12g/1mL)	한국릴리(유)	1	mL/ 펜	295,250			주사	
421 항악성종양제										
699701ATB	lorlatinib 25mg									
699701ATB	648903610	로비큐아정25밀리그램(롤라티닙) _(25mg/정)	한국화이자 제약(주)	1	정	52,819			내복	
699702ATB	lorlatinib 0.1g									
699702ATB	648903620	로비큐아정100밀리그램(롤라티닙) _(0.1g/정)	한국화이자 제약(주)	1	정	158,457			내복	